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4호)

❍ 2026. 9. 1.

❍ 재정건설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8. 14. 서초구청장(도로과)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8. 18.

다. 상 정 일 자 : 2026. 9. 1.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 그 밖에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어법과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민희)

1. 개정조례안의 제출 경위

○ 1999년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도로법」 제91조[1]에 따라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508,408천원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도로굴착복구기금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2.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1)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례로 설치한 자체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99. 5. 20.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조례 제정 당시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음.

○ 그러나 2015. 7.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3428호)이 개정되면서 2016. 1. 1.부터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미만으로 설정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7조는 경과조치를 두어 2016. 1. 1. 이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 12. 31.까지로 하였음.

○ 따라서 2016. 5. 26. 제2조의2를 최초로 신설하였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이후 2021. 10. 28.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

2)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로 연장하였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3]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을 제출하였으며, 2026. 5. 28.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통신, 난방 공사 등 기반시설을 지하에 매설하기 위한 도로 굴착(점용) 공사가 완료되면, 굴착된 도로의 복구공사 및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①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0. 28.>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포장도로 정비,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수선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매년 도로굴착 허가 신청 물량의 편차가 있긴 하나 2024년 12,144,315천원, 2025년 8,055,204천원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 나아가 굴착 후 신속한 도로 복구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2024년도에는 직접 굴착부분 포장복구 2,349건, 잦은 굴착구간 노후도로 정비 31건, 불량맨홀 정비 196개소, 2025년도에는 직접 굴착부분 포장복구 2,882건, 잦은 굴착구간 노후도로 정비 16건, 불량맨홀 정비 173개소 등의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음.

○ 해당 사업은 매년 평균적으로 2,500여건 이상의 도로굴착구간에 대한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약 9,442백만원(3개년 평균)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목적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재원의 조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원회 위원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단서 삭제>**

○ 안 제7조제3항은 부위원장을 “안전건설국장”→“기금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음. 이는 조직 개편 및 업무 조정 등으로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되거나 분장사무가 재조정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게 됨.

- 따라서 “기금 담당 국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조직 개편이나 행정기구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4]를 준용한다”는 안 제7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와 중복되는 규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5]가 조례에도 당

4) **제23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연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 및 현행 조례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운영) <신 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회의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간사, 사무기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그러나 현행 조례 제9조(위원회 운영)[6]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 사유 발생에 따른 심의요구서 제출 및 심의결

5)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6) **제9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무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과 통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안 제9조제1항에 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해 규정한 것은 적절해 보임.

○ 또한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제2항으로 이동하였음.

- 위원회의 기능 조문에는 해당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과 소관 사무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여야 하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여 조 제목과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은 위원회 간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안 제9조로 조문을 이동하고, 간사를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팀장”→“도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간사 규정과 관련하여, 특정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려면 해당 직위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되

어 있어야 하나, “팀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된 직위가 아닌 공무원이 간사인 경우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입법 형식을 반영해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300,000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그러나 서초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7]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바람직해 보임.

▣ 불필요한 조문 삭제(제6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삭제)

○ 현행 조례 제6조는 “기금은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

7) **제13조(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는 독립된 자금이므로,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은 기금의 본질상 당연한 사항으로 해당 조문은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함.

- 따라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조례 제14조는 기금의 결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현 행 조 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도로굴착복구기금이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금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 조례 제14조는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이미 법령에 따라 기금결산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법령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재기재 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 현행 조례 제15조는 기금관리대장, 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금의 관리 및 출납 업무는 모두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를 통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어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는 것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실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행 조례 제15조의 삭제에 따라 별지 제3호·제4호·제5호서식도 실효성이 없으므로 함께 삭제해야 할 것임.

현 행 조 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현행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

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나아가 현행 조례 제16조제2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가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자치법규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규칙”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례의 준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용어정비, 어문규정 및 자구 등의 수정(제1조, 제2조의2, 제3조,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13조 등)

○ 안 제5조제2항은 현행 “구금고”를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기금을 예치·관리하는 구 금고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2.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띄어쓰기, 문장 구조에 맞지 않는 어법 등

을 일괄하여 정비하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문규범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3.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사후관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매년 평균적으로 2,500여 건 이상의 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복구공사를 위해 기금 운용의 목적과 실효성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도로굴착복구기금 위원회와 관련하여 부위원장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여 향후 행정기구 개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입법경제성을 높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한 조문의 위치를 기능 조문에서 운영 조문으로 바로잡아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조례 내에 산재해 있던 위원회 간사 지정 규정을 일

반적인 입법 형식에 맞게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문장 구조에 맞지 않는 어법 등을 일괄하여 수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적인 도로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u>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이 다른 위원회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u>

답 :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과 운영현황을 다시 확인하고,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보겠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